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경기북부경찰청 교환기·네트워크·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
※ UBIS-VR(자동응답장치) : 1식
※ UBIS-RBT(자동안내장치) : 1식
※ UBIS-FAX서버 : 1식
※ UBIS-iFAX서버 : 1식
※ Intel Xeon E3 1220 : 2식(웹FAX 파일변환 서버)
※ UBIS-ACS(음성동보장치) : 13식

○ 발주자(갑) : 경기도북부경찰청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(을) : ㈜유비라인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경기북부경찰청 교환·네트워크·정보화장비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
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 품질부분의 비중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(₩4,190,000원/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. 06. .

"갑" (발주기관명) 경기도북부경찰청장 (인)

"을" (제조사 또는 공급사명) ㈜유비라인 대표이사 (인)